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11. 4.

완 주 군 수

❑ 개 요

○ 대 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기재된 사항과 진실규명결정통지서의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신청자격 : 피해자 또는 피해자 친족(배우자, 4촌이내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정정절차(정정결정 신청 후)**

심의·의결	→	**결정 통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	**접수 및 처리**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

❑ 신청안내

구 분		내 용
정정 결정 신청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02-3393-97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② 진실규명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통지 이후)	신청방법	정정 대상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서 **※ 붙임참고**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서 ⑤ 신청인 신분증

붙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별지 서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대상자	성명	(한 자 :)		생존여부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본(한자)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등록기준지						
	부모	성 명	부:		모:		
		등 록 기준지	부:		모:		
기록사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 항						
	정정할 사항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구)·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2.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수수료 없 음